

의안번호	2219660
의 퇴 인	박홍배의원
회 답 일	2026.7.21.
추계번호	26B32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7조의6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 한 적용)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u>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강하거나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직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u> (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제1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상세 사유

-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함

1) (적용 제외) 65세 이후 노무제공계약을 한 경우, 노무제공계약의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등

- (보험료율) 현행법에 따라 노무제공자는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실업급여 계정에 대한 보험료만 부과됨
 - 2025년 기준 고용보험료율은 1.6%로 사업주 및 종사자가 각각 0.8%씩 부담함
- (가입자 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은 노무제공자 중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 업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90만명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함

[표 1] 고용보험 가입 노무제공자 수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고용보험 가입 노무제공자 수	432,395	735,408	791,083	826,864	901,137

주: 연도말 기준 피보험자 수

자료: 고용노동부

- 개정안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강하거나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직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보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의 시행으로 기존에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았던 노무제공자 중 일부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이 확대되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대상자가 증가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개정안의 시행으로 새롭게 고용보험에 편입될 노무제공자의 수와 이들의 소득 수준 등을 검토하여야 하나,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